

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신설 2019. 3. 14.>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표시(제23조의2제5항 관련)

1. 표시기준(로고모형)

가. 천연화장품



나. 유기농화장품



2. 표시방법

가.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할 것

나.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